

國內入養 兒童과 家庭

崔 京 錫*

I. 序 言

나라와 국민의 경제수준은 향상되는데도 기아나 미아 등 불우아동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불우아동의 상당수가 입양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왔다. 1950년대 초 6.25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입양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우아동의 대부분이 해외에 입양되어 왔고 국내입양은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우리 나라의 아동을 외국에 입양시키는 데는 자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되어 그 동안 많은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도 해외입양에 의존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우리 나라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내입양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이며 언제까지 해외입양에 의존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입양은 기대하는 만큼 활발히 증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로 代를 잇기 위하여 입양을 하게 되며, 따라서 異姓入養을 꺼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血緣中心의 입양관습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代를 잇기 위하여 입양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실제로 남자아이 보다 여자아이의 입양이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도 국내입양은 해외입양에 비하여 아직도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 글은 국내입양아동과 이들을 입양한 가정(부모)의 특성을 분석하여 국

* 中央大 社會福利學科 副教授.

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성공적인 입양과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의 요건을 알아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입양이 아동과 입양가정의 私生活 保護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자료에 접근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며 자료자체가 입양업무를 담당한 사회사업가들이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기록한 유형화된 간접적인 자료이어서 의도하는 내용을 분석해 내기 어려웠다.

또한 입양대상 아동이나 입양부모 모두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맞아야 하는 제약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특성에 제한이 따르고 있어서 상당히 단순화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의 내용은 과거에 국내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하여 수행된 연구와 자료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과거의 자료들과는 시간상의 변화를 밝혀내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본고에서 이용한 자료가 국내입양에 대한 全數 調査는 아니어서 代表性과 一般化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제한된 자료나마 內容分析을 통하여 변수간의 교차분석을 하여보면 보다 더 의미있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는 다음 기회에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1984년 1년동안 한 입양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국내입양과 양부모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II. 入養兒童의 特性

1. 年齡과 性別

입양아동의 나이는 다음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의 97.1%가

〈표 1〉 국내입양아동의 성별과 연령 단위 : %

성 별	연령(살)	연령(살)					합 계
		1미만	1~2미만	2~3미만	3~5미만	5이상	
남		60.1	0.9	0.2	0.2		61.4
여		37.0	0.4	0.4	0.6	0.2	38.6
합 계		97.1	1.3	0.6	0.8	0.2	100.0

1살 미만이고, 1~2살 미만이 1.3%, 2~3살 미만이 0.6%, 3~5살 미만이 0.8%, 그리고 5살 이상이 0.2%로 1살 미만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新生兒나 乳兒의 비율이 높은 것이 國內入養과 海外入養의 차이이기도 한데, 이러한 현상은 申韓德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養父母가 입양하고자 하는 아동의 나이는 1個月 미만이 37%, 1~3個月이 38%, 4~12個月이 20%, 그리고 1~3살은 5%에 불과하여 전체의 95%가 1살 미만의 아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75%는 3개월 미만의 乳兒를, 그리고 그 중 37%는 특히 1개월 미만의 新生兒를 입양하고 싶어했다.¹⁾

이처럼 新生兒나 乳兒를 입양하려는 이유는 입양사실을 숨기고 친생자인 것처럼 기르려 하거나 또는 어려서부터 기르는 편이 정을 들이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 하다. 따라서 국내입양의 경우는 新生兒나 乳兒가 아니면 입양이 어렵게 된다.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 수록 입양의 비율은 낮아지는데 다만 2~3살 미만이 0.6%인데 비하여 3~5살 미만이 0.8%로 0.2%가 더 많은 까닭은 아마 3살 정도면 어느 정도 자신의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나이이므로 입양사실이나 친부모와 양부모를 구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입양을 꺼리고, 기왕 입양사실이나 양부모임을 알게 될 바에야 양육하기가 보다 수월한 3살 이상의 아동을 선택하게 되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입양아동의 性別은 男兒가 61.4%이고 女兒가 38.6%로 남아선호도가 인양에서도 단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李智淑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²⁾ 李智淑의 연구에서는 다음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양아

표 2) 입양아동의 성비율의 변화

성 별	연 도	단위 : %			
		1975	1978	1979	1980
남		62.7	60.2	56.8	54.8
여		37.3	39.8	43.2	45.2
합 계		100	100	100	100

자료 : 李智淑

1) 申韓德, 韓國人의 入養態度,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p. 34

동의 男女比가 5년 동안에 8% 가까운 反轉을 보이고 있다. 즉 1975년에는 男兒의 入養이 62.7%였으나 1978년에는 60.2%로 2.5%가 감소하고, 1979년에는 56.8%로 3.4%가, 그리고 1980년에는 54.8%로 2%가 각각 감소하여 5년 사이에 7.9%가 감소한 반면, 女兒의 入養은 1975년에 37.3%에 불과하였으나 1978년에는 39.8%로 2.5%가 증가하고 1979년에는 43.2%로 3.4%가 그리고 1980년에는 45.2%로 2%가 각각 증가하여 男兒入養이 감소한 만큼(7.9%) 증가하였다.

그런데 표 1에 나타난 1984년의 入養兒童의 性比는 표 2의 1978년도 비율과 비슷하다. 申韓德의 研究에서도 양부모들은 여아(28.3%) 보다는 남아(61.5%)를 원하였고, 남아나 여아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10.2%였다.³⁾

상기 표 1을 보면 입양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아의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여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1살 미만의 경우는 남아가 60.1%이고 여아가 37.0%인데, 2~3살 미만에서는 남아 0.2%에 여아 0.4%로 여아의 비율이 배가 많아지고 3~5살 미만에서는 남아 0.2%에 여아 0.6%로 여아가 두 배나 많아지고 5살 이상에서는 男兒는 없고 여아만 0.2%이다. 이는 아마도 남아는 代를 잇기 위해 新生兒를 입양하여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처럼 기르려는 때문이고 2살 이상의 아동을 입양하는 사람들은 입양특적을 가정의 쓸쓸함을 달래거나 자녀양육의 재미에 두고 있어서 입양사실을 감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2. 入養對象兒童이된 原因

아동이 자기의 親父母 슬하에서 자라지 못하고 入養對象者가 된 原因은 다음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未婚母의 子女가 46.7%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다음이 부모가 누구인지 불확실한(병원에서 출산후 산모가 도주하는 등) 경우가 17.7%이고, 父母가 빈곤하여 기를 수 없어 입양대상자가 된 경우가 14.8%, 영·육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있다가 입양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이 8.8%, 父母가 사망하여 입양대상자가 된 경우가 4.7%, 부모에게 버림을

2) 李智淑, 入養事業의 政策方向, '80年代 福祉社會建設을 向한 社會福祉 政策方向 -제10회 사회사업가 세미나 보고서-, 한국사회사업가협회·홀트아동복지회, 1982, p.111

3) 申韓德, 上記論文, p.33

〈표 3〉 입양대상아동이된 원인

단위 : %

원인 성 별	미혼모 기 아		친 권 불 명 미 혼 기 혼 기 타			시 설	부 사	모 랑	빈 곤 기 타	합 계
	미혼모	기아	미혼	혼	기타					
남	22.1	1.9	4.3	1.0	1.7	3.4	2.6	3.4	1.3	41.7
여	24.6	2.5	5.3	3.5	1.9	5.4	2.1	11.4	1.6	58.3
합 계	46.7	4.4	9.6	4.5	3.6	8.8	4.7	14.8	2.9	100.0

받아 경찰관서를 통하여 棄兒로 확인된 아동이 4.4% 등이다.

이들의 性別을 보면 女兒가 58.3%로 41.7%의 男兒 보다 훨씬 많다. 이들이 入養對象이 된 原因과 性別을 보면 父母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女兒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빈곤 때문에 입양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여아가 77.1%인데 비하여 남아는 22.9%에 불과하고 시설아동과 기아의 경우도 여아가 각각 61.4%와 56.8%로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父母가 사망하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아는 父母들이 양육하려고 하지만 빈곤 등의 이유로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여아를 입양대상자로 하거나 유기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의 要保護兒童(약 3,000여명) 가운데 國內家庭에 입양된 아동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였다.

3. 引受經緯

이들 要보호아동들이 入養機關에 오게되는 경위는 다음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출산직후 바로 입양기관으로 인도되는 경우가 58.0%로 압도적으로 많고 시·군·구청이나 경찰관서 등 행정기관을 통해 인도되는 경우가 14.2%, 그리고 영·육아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도

〈표 4〉 인 수 경 위

단위 : %

병원(조산원)	영·육아시설	미혼모보호시설	행정기관	기 타	합 계
58.0	10.9	4.9	14.2	12.0	100.0

되는 아동이 10.9%,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인수해 오는 경우가 4.9%였으며 나머지는 父母, 친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양기관에 인도되고 있다.

4. 入養期間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가 나섰을 때 아동이 이들 가정에 입양되어지는 기간은 4주 이상이 54.3%이고 4주 정도가 4.8%, 3주가 12.5%, 2주 정도가 12.1%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입양되는 경우가 16.3%였다. 이 기간 동안에 입양기관의 사회사업가들은 입양가정과 입양대상 아동의 입양의 적합성을 판정하고 적절한 입양가정과 아동을 연결하는 한편 아동의 친부모로부터 친권포기의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신생아의 경우는 짧은 시일내에 입양이 성립되어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의 연령이 많은 경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되어 양부모들이 어린 아동을 원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주일 이내에 양부모의 가정을 방문하고 양부모로서의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입양기관들이 아동을 보호하는 부담도 빠른 기간내에 입양이 성립되도록 작용하는 요인의 하나인 것 같다.

Ⅲ. 入養家庭의 特性

아동을 入養하는 가정의 환경은 入養兒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입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入養過程에서 입양기관과 社會事業家들은 입양부모의 경제적·정신적·정서적·성격적·도덕적·환경적 능력과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해 내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養父母가 될 수 있는 資格要件의 기준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아 사회사업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으로서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많다. 사회사업가들이 입양가정의 적격여부를 가리는 상담과정에서 밝혀진 養父母의 社會的 特性과 入養動機, 入養에 대한 態度 등을 간략히 살펴보자.

1. 養父母의 年齡과 生活水準

양부모의 연령은 입양결정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다. 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가 너무 적거나 양부모가 너무 연로한 경우에는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장애가 된다고 보아 法的으로도 규제하고 있다.

양부의 연령은 31~35살이 38.2%로 가장 많고 다음이 36~40살(26.7%)로 30代가 전체의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5~30살이 24.6% 그리고 40代가 10.4%이다.

<표 4> 양부모의 연령

양부모		연령(살)					단위 : %	
		22~24	25~30	31~35	36~40	41~50	50이상	합 계
양부			24.6	38.2	26.7	10.4		99.9
양모		4.6	44.5	33.2	14.0	3.0		100.0

양모의 연령은 25~30살이 전체의 44.5%나 되고 31~35살이 33.2%, 36~40살이 14.0%, 22~24살이 4.6% 그리고 40代가 3.0%여서 남자 보다는 5살 정도 아래의 연령집단인 20代 후반에서 30代 전반이 77.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부간의 연령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한다. 대체로 양부모들은 결혼 후 한동안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다가 입양을 하게되므로 연령이 30代에 집중되어 있다. 40代의 비율이 낮은 것은 양부모의 연령이 많은 경우 입양기관들이 입양을 꺼리기 때문인 듯하다. 양모

<표 5> 양부모의 연령

응답자 나이(살)	단위 : %	
	양부	양모
22~24		2
25~30	7	35
31~35	36	38
35~40	42	19
41~50	14	6
51이상	1	
합 계	100	100

자료 : 申韓德.

<표 6> 양부모의 연령

연령(살)	단위 : %							
	1975		1978		1979		1980	
연도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24이하	0.36	1.8	0.2	0.5	0.6	4.1	0.7	3.5
30이하	9.85	19.3	13.1	26.8	14.8	33.6	16.8	34.1
40이하	68.6	66.8	67.4	58.9	68.6	56.2	66.6	57.6
50이하	19.3	10.6	17.6	12.8	14.8	5.8	13.7	4.5
50이하	1.8	1.5	1.7	0.9	1.3	0.4	2.2	0.3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李智淑.

의 경우 자녀의 출생을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는 20代 초반도 4.6%나 되는데 이들은 아마 출산능력이 확실히 밝혀진 부부들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양부모의 연령이 30代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표 5와 표 6에 밝혀진 申韓德과 李智淑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李智淑의 자료에서는 점차로 양부모의 연령이 다소 젊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친자의 출생을 기다리는 기간이 짧아지고 보다 일찍 입양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養父母의 學歷과 宗教

양부모의 학력은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도 상관성이 있어 역시 입양판정의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양부모들의 학력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양부의 경우 고등학교가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대학수준이 22.8%, 중학교가 20.4%이며 국민학교는 5.4%에 불과하고, 대학원 수준도 1.9%나 된다. 양모도 고등학교가 41.3%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38.6%, 국민학교 11.0%, 대학이 8.8%나 된다. 중·고등학교 수준이 거의 90%에 이르고 있어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지식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 7> 양부모의 학력

		단위 : %						
양 부모	학력	무 학	국민학교 ~초졸	중학교 ~중졸	고등학교 ~고졸	대중학교 ~대졸	대학원	합 계
양 부			5.4	20.4	49.5	22.8	1.9	100.0
양 모		0.2	11.0	38.6	41.3	8.8		100.0

양부모의 학력은 申韓德의 연구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양부의 32%, 양모의 13%가 대학졸업생이었고 양부의 5%가 대학원 졸업생이었다. 이처럼 입양부모의 학력이 높은 까닭은 학력이 낮은 입양신청자에게는 입양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입양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성을 띄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양부모의 종교도 아동의 양육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입양기관에 따라서는 신종교의 신자나 지나치게 종교에 몰두하는 광신자들은 아동양육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이런 종류의 입양신청자에게는 입양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양부모의 종교를 보면 38.0%가 종교가 없었으며, 기독교가 27.4%, 불교가 26.7%, 천주교가 7.9%였다. 우리나라의 종교인 수의 비율에 있어서는 불교인구가 많은데 양부모의 경우는 기독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인들이 입양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신한덕의 연구에서도 기독교인(32%)이, 불교인(13%)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入養動機와 親子女 有無

입양동기는 입양의 시작이면서 입양을 결정하고 아동을 양육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양부모의 입양동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되는 代를 잇기 위한 경우(21.3%) 보다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쓸쓸함을 달래기 위한 경우가 배 이상(67.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자신의 친자녀가 있으면서 친자녀에게 형제가 필요해서 입양을 하는 사람이 9.4%나 되어 그들이 얼마나 원만한 가정생활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입양의 필수요건이었던 代를 잇기 위한 입양은 申韓德과 李智淑의 연구에서도 20% 丙外인 것으로 나타나 그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지숙의 연구에서는 점차 代를 잇기 위한 입양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가정이 쓸쓸해서, 친자녀에게 형제가 필요해서 또는 불쌍한 아동을 위하여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자녀가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형제가 필요하거나 불쌍한 아동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매우 진보적인 양부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입양의 활성화

〈표 8〉

입 양 동 기

단위 : %

가정이 쓸쓸해서	代를 이으려고	형제가 필요하여	기 타	합 계
67.2	21.3	9.4	2.1	100.0

<표 9> 입양 동기

단위 : %	
동 기	비 율
대를 잇기 위하여	26
가정이 쓸쓸해서	52
부모가 되고 싶어서	11
아이에게 형제가 필요해서	6
때려다 키우면 임신이 될까하여	5
합 계	100

자료 : 申韓德

<표 10> 입양 동기

단위 : %			
동 기	년 도		
		1975	1978
가정이 쓸쓸해서		55.8	60.9
대를 잇기 위해서		20.4	19.0
아이에게 형제가 필요해서		9.9	12.8
불쌍한 아동을 위하여		2.4	2.4
기 타		11.5	4.8
합 계		100	100

자료 : 李智淑

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스럽고 반가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친자녀가 있는 양부모가 16%나 되었는데 그 가운데 친자녀가 1명인 경우가 9.6%, 2명인 경우가 3.7%,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도 2.7%나 되었다.

4. 入養提案者와 不妊의 原因

친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게되는 경우 누구에게 임신불능의 원인이 있는가, 그리고 누가 먼저 입양을 제안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불임의 원인은 55.3%가 養母에게 있었고 양부가 원인인 경우는 18.5%로 양모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不明이 17.7%, 부부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1.0%였다 이처럼 養母에게 원인이 있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출산이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출산과 관련된 복잡한 여성의 생리구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不妊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 여성들이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입양에 적극성을 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입양제안자의 53.2%가 양모여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양부가 31.1%, 양부모의 父母가 7.1%, 친척이나 친지가 6.7%, 그리고 기타가 1.9%였다. 申韓德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양제안자는 양모가 45%로 가장 많았고, 양부가 35%, 친척이나 이웃이 11%, 기타(병원 의사나 자녀등)가 6%, 그리고 양부모의 부모가 3%였다. 이를 보면 입양은 역시 양부모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양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入養機關을 알게 된 經緯

입양을 하려고 생각해도 실제로 입양기관을 알고 찾아오게 되는 때는 어떤 통로를 거치게 되고 이 통로를 면밀히 검토하면 입양을 생각하며 주저하는 보다 많은 예비 양부모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입양기관을 알게 된 경위

					단위 : %	
잡지 광고를 보고	병원·의료기관을 통하여	입양기관 직원·위탁모 소개	친지의 소개	기 타	합 계	
47.4	19.6	8.8	17.3	6.9	100.0	

양부모들이 입양기관을 알고 찾아오게 된 경위는 잡지의 광고를 통한 경우가 47.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병원이나 의료기관으로 19.6%, 친지의 소개가 17.3%, 입양기관의 직원이나 위탁모의 소개가 8.8%, 그리고 기타가 6.9%이다. 잡지광고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입양기관들이 주로 여성지에 광고를 내고 있고 입양제안자가 양모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으로 미루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광고와 같은 공적인 방법 보다는 아직도 개인적인 접촉이나 소개를 통하여 입양기관과 접촉하는 비율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입양기관직원이나 위탁모의 소개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에 보다 적극성을 띄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6. 입양사실 은폐여부와 방법

친자식이 없어 입양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입양을 약점으로 생각하거나 입양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입양아의 양육이나 입양아와 양부모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숨기고 자신이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입양기관과의 오랜 접촉을 꺼리고 나이가 많은 아동을 기피하며, 아동이 입양된 뒤 입양기관에서 사후보호를 하기도 어렵게 된다. 그러나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절대다수(56.8%)의 양부모들이 자기들이 낳은 것으로 위장하여 기르겠다고 하며, 심지어는 남편이 의도를 하여 낳아온 것으로라도 위장하여 친자식인

하고 있다. (제866조)

외국의 경우(서독 25세 이상, 자신 또는 배우자의 사생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21세 이상, 벨기에 35세이상, 미국의 미혼자 25세이상, 노르웨이 25세이상, 덴마크 25세 이상)에는 양친의 연령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입양한 양친의 연령은 아래 표와 같은 비율이다.

〈표 1〉 양부모의 연령

연령	1982		1983		1984		1985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25세	2	5	—	6	1	5	1	4
26~30세	12	34	16	34	16	43	17	31
31~40세	67	54	70	52	73	48	73	63
41세이상	19	7	14	8	10	4	9	2

자료 : 홀트 아동복지회

(2) 양친될 자는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입양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덴마크(제5조), 노르웨이(제2조, 제3조), 독일(민법 제1743조 제5항)의 경우에는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3)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입양할 것. (민법 제874조)

〈표-12〉 입양사실 은폐여부와 방법

위장(낳은 것으로)	남편이 낳은 것으로	입양사실을 밝힘	단위 : %	
			기 타	합 계
56.8	9.8	23.4	10.0	100.0

것처럼 기르려 하고 있으며, 입양사실을 밝히고 기르겠다는 사람은 $\frac{1}{4}$ 도 안 된다.

신한덕의 연구에서도 입양사실을 밝히고 기르겠다는 사람은 25%에 불과하고, 양모가 낳은 것으로 위장하겠다는 사람이 18%. 그리고 남편이 外道

진단서 발급시 이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의사의 소견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入養機關 適格

우리나라 입양법은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위해 입양성립 과정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입양기관(1986년 현재 공설 11개, 사설 30개, 이중 국외입양은 4개소)을 허가하여(법 제10조) 기관 입양만 허용하고, 개인 또는 기타기관(예컨대, 병원, 조산원 및 입양허가를 받지 않은 아동보호시설)에게는 입양알선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한다. (법 제18조 제1항) 입양기관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법인'이어야 한다. (제10조 제1항)
- (2) 입양기관은 '보호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법시행령 제6조 제3호)
- (3) '전문가'(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원, 영양사, 조리사, 아동심리전문가 등)를 두어야 한다. (법시행령 제7조)
- (4) 일정한 수와 급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5) 입양기관의 장은 '한국인'이어야 한다.

3. 形式的 要件

1) 意義

양친에 의해 입양효력을 발행시킬 요건을 갖춘 서류를 호적법의 정함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행위(신고)이다. (법 제6조, 호적법 제66조, 민법 제878조)

입양신고 서류에는 양자, 양친적격 증명서류와 입양등의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리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수리가 거부(각하) *zurückweisung* 된다. (민법 제881조)

2) 虛僞出生申告에 의한 入養의 成立 與否

양자로 하려는 '자'를 자기의 '친생자'로 신고할 때 입양성립이 합법적이

나 아니면 무효이나의 경우로서,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현실적으로 거의 다 양친이 친생자로 신고함으로써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만든다. 우리나라 관례는 입양효력을 인정할 경우⁸⁾도 있고, 반대한 경우⁹⁾도 있었으나 긍정론이 우세하다.

다만 허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양자를 친자관계로 만들어 입양효력이 발생한 양친이 그후 친자를 출산하여 양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 과양을 하거나 아동을 학대하여 다시 보호아동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친을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과양으로 곤경에 빠진 요보호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Ⅲ. 入養서어비스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국내 입양의 관행적 서어비스는 크게 볼 때 미혼모 또는 관계자의 접촉→아동상담→입양아동 선정→아동 양육→양부모 접촉→입양아동 및 양부모 상담→양친 적격 심사→아동 인계→호적 신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입양알선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의 기능이 크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복지를 위한 서어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나 여기서는 아동복지 및 입양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우려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에 국한하여 논하고자 한다.

1. 入養完童 相談

(1) 입양 대상 아동 연령 : 일반적으로 남아 5세, 여아 8세 이하만 선정하도록 기관에서 요구한다. 국내 입양아동 선정으로만 생각할 때는 오히려 연령이 높은 것 같은 느낌이나, 국외 입양을 염두에 두고 아동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입양 알선이 쉬운 연령층으로 기관 목표에 적합하다. 그러나 법률상 18세미만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 선정의 폭을

8) 대판 1947.11.25, 4280 민상 126, 판례총합 제186면, 대판 1977.7.27, 77 마 492, 판례연구, 김주수, 법률신문 1233호, 1977.12.26.

9) 대판, 1967.7.18, 67 마 1004, 김주수, 전지신문, 1977.12.26.

넓혀 아동 복지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입양동의 : 입양 동의권자는 입양 특별법과 민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으나,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별도의 입양 동의 사실증명(예 : 인우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부실기재 우려가 있다. 또한 '입양동의'를 '친권포기'¹⁰⁾의 용어 사용은 잘못이다.

(3) 정신 박약아 및 장애인 인수 기피 : 정신박약아는 실제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신박약아동의 인수를 금지하고, 또 장애자는 입양의 곤란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나, 아직 아동 보호 기관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우선 인수하여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전원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아동 선정시 각종 지원 : 미혼모의 출산을 돕기 위한 분만 보조비가 가끔 병원의 부당한 요구에 부딪힌다. 또 시설에 수용된 아동 선정 때도 각종 보조비가 여러가지 명목으로 지출된다. 미혼모나 아동 복지에 직접 관계 없는 비용의 지출은 아동 복지 방향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5) 입양 알선 기관의 경쟁적 아동 인수 : 아동복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 兒童委託養育

(1) 국내 입양 대상 아동의 양육기관 : 입양 상담기간을 고려하여 약간 연장할 필요 있다.

(2) 위탁 양육 가정 선정 : 법적 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입양 알선 기관에서 편의대로 규정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서 아동 양육에 알맞은 선정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¹¹⁾

10) 친권은 권리인 동시에 국가 및 사회적 의무의 성격을 더고 있으므로 포기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김추수, 「친족, 상속법」, 법문사, 1985, pp. 247~267 참조. 따라서 입양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 중 '.....아동의 친권일체를 포기함'은 '.....아동의 입양을 동의함'으로 고쳐져야 한다.

11) 홀트아동복지회 업무지침의 위탁가정 선정 기준을 보면 ① 기독교 가정으로 ② 불우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③ 가족이 모두 건강해야 하며 ④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서 의·식·주외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⑤ 국문을 해독하는 ⑥ 25~50세의 출산경험이 있는 여자도 ⑦ 형제·자매가 있고, 미취학 자녀가 없는 ⑧ 화목한 가정으로 되어 있는바, 지침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입양 대상 아동 전원 및 이동: 현행 수속이 불편하고 수속에 걸리는 시간 등의 사유로 합법적 아동 이동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 같다. 감독기관은 법률의 강행을 고집하지 말고 아동 보호에 우선권을 두면서 아동 신원을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수속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아동의 가정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入養 相談

(1) 양친 선정: ① 양친 건강 진단서--건강 진단 전문 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도 아동 양육에 지장이 있는 병명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므로 감독청의 지침이 요망된다. ② 양친 재산 조사--담당 사회복지사의 방문 질의나 양친될 자의 진술에 따라 사정하는데, 재산 소유 정도의 객관적 판단 기준 위에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재산상태를 합리적으로 사정해야 한다.

(2) 입양 알선 비용 보상: 매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비용 보상을 받고 있으나, 실비 보상이 되지 않아 기부등의 방법으로 양친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다. 감독청에서는 입양알선 실비를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입양알선 기관에 지침을 주어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3) 입양 정보 교환: 입양에 관한 정보 교환은 일반적으로 비밀 유지란 이유로 입양기관간, 입양 기관과 양친될 자에게 대단히 폐쇄적이다. 아동 인권이나 친부모와 그 관계자 및 양친될 자와 그 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보 교환이 자유스러워야 한다. 특히 입양자원과 양친될 자의 자원을 전국적으로 통합 또는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입양 기관 상호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4) 양친될 자의 청원 허용: 실비 보상을 이유로 담당 사회복지사는 국내 입양을 고의로 기피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독청에서는 입양 자원과 양친될 자원의 정기적 파악 및 양친될 자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5) 양친될 자의 '부모' 교육: 아직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친될 자가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여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양친되기를 희망한 자에게 적절한 단기 아동양육 교육을 이수토록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입양기관 아닌 사회교육 기관에서 교육함이 바람직하다.

IV. 우리나라 入養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우리나라 입양의 성립과정에서는 양자될 자와 양친될 자 간에 합법적인 친자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양자, 양친의 적격을 요구할 뿐만아니라 입양을 동의할 자와 입양을 알선할 기관의 합법성을 요구하며 이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양친의 신고로 입양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법률의 미비로 자칫하면 아동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입양은 아동에게 이익될 경우에만 인정(별기에 민법 제343조)하려는 것이 근대적 입양법의 특색으로 볼 때 우리나라 입양법은 취지는 같이 하고 있으나 전통적 관습에 젖어 내용의 불비가 상당히 많다. 입법 체계 정비가 요망되며,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보완함이 필요하다.

(1) 양친될 자의 자격은 '부모'로서 행위할 수 있도록 연령, 재산, 양육 기술, 인간성, 사회성숙도 등을 객관적, 실질적으로 조사, 평가할 수 있도록 양친자격 규정을 보완하고, 형식적 요소는 제거해야 한다.

(2) 독신자도 위의 기준에 합당하면 입양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이 좋다.

(3) 양자될 자도 의형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입양 전 보호기간 중에 인간으로 성숙되도록 의료주치, 정서훈련,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 입양 후에 갈등이 없도록 하며, 보호시설(위탁양육가정 포함)의 환경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둔다.

(4) 입양특례법의 법적 자주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법등에 위임한 규정을 입양법의 성격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오해를 일소시켜야 한다.

(5) 혼외출생자의 입양동의에는 생부 또는 생모 중 어느 일방이 동의할 수 없을 때에 다른 일방의 동의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의 '동의할 수 없을 때'란 보호자로서 행사할 수 없을 때로 보아야 한다.

(6) 입양동의를 동의권자에게 일정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진의를 확인하도록 한다.

(7) 입양동의 후에는 법원의 선언 또는 기관에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예컨대, 선언 또는 통지 후 15일)이 지나면 절대 취소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한다.

(8) 입양기관은 위의 동의가 확정되기 전에는 입양을 알선할 수 없도록 입양알선금지 조항을 제정한다.

(9) 입양 후 양자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속 등에 관한 보장규정을 두고 아동을 보호 한다.

(10) 미성년 입양 아동을 파양할 때는 성년이 될 때까지 친자와 같은 양육비를 부담하거나 파양 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상속토록 한다.

(11) 허위 친자 신고 후 고의로 파양했을 때에는 재산상속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한다.

(12) 파양 후에는 법원과 양친의 통지에 의해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분쟁을 조정, 해결할 전문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14)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행할 사후 지원내용과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15) 입양가정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법과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16) 입양자원 파악과 입양 촉진을 위한 홍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벌인다.

(17) 입양신청 전 '부모' 될 준비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18) 입양담당자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아동권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한다.

(19) 입양기관의 입양기피 사례를 예방하여 아동권익 및 양친권익 보호규정을 두어야 한다.

(20) 입양을 원하지 않고 수양만을 원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예 : 국고지원 교육비 지원, 조세 감면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V. 結 論

우리나라 입양법은 아동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또 입양알선기관에서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감독청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 국내입양을 저해하고 있는 장애 요소의 제거와 적극적인 홍보를 행하는 한편 입양알선기관에서는 관행적 입양서비스 중 문제점을 스스로 탈피하는 운동에 앞장서서 아동복지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한다. 담당 사회복지사도 간단없는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입양알선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며,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의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 복귀에 노력함으로써 복지국가로 향한 기틀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